■ 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44호서식] <개정 2014.12.30.>

발급번호:

축산물(돼지)등급판정확인서

「축산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:

성 명: (인)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업소명		업태유형	
	주 소			
도축장	업체명		등급판정일자	년 월 일
	소재지			

(단위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
전체: 두 (1+등급: 1등급: 2등급: 등외등급:)

납품내역	업태유형	납품처명	부위명	중량(kg)

₩

발급 횟수: 건 발행일자: 년 월 일

※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품내역은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